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54316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택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 종결 2019. 10. 11.

판결 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1,891,387원 및 그 중 1,702,613,976원에 대하여는 2018. 6. 19.부터, 155,131,167원에 대하여는 2018. 6. 27.부터 각 2018. 9.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률을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9. 6.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2019. 6.1. 이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기각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경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정덕기, 판사 최지현

[별지]

청구원인

1.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2.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와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 가. 2010. 11. 5., 보증번호 C,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4.(차후 보증원금과 보증기한이 42,500,000원과 2018. 4. 27.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0. 11. 10. D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1보증건'),
 - 나. 2012. 2. 17., 보증번호 E,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2. 17.(차후 2019. 2. 14.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2. 2.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2보증건'),
 - 다. 2013. 4. 10., 보증번호 F, 보증원금 81,000,000원, 보증기한

2015. 4. 10.(차후 2018. 4. 6.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3. 4.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3보증건'),

라. 2013. 6. 26., 보증번호 , 보증원금 198,000,000원, 보증기한 2021. 6. 26.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3. 6.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0,000,000원의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4보증건'),

마. 2014. 6. 19., 보증번호 , 보증원금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5. 6. 19.(차후 2018. 6. 15.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4. 7. 1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5보증건'),

바. 2015. 2. 23., 보증번호 ,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2. 23.(차후 2019. 2. 14.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5. 3.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6보증건'),

사. 2015. 2. 23., 보증번호 , 보증원금 76,500,000원, 보증기한

2016. 2. 23.(차후 2019. 2. 14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5. 3.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7보증건'),

아. 2016. 8. 24., 보증번호 , 보증원금 1,105,000,000원, 보증기한 2028. 8. 24.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85%)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6. 8.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00,000,000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이하 '제8보증건'),

자. 2017. 5. 31., 보증번호 ,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31.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해 주어, 위 피고가 2017. 5.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습니다(이하 '제9보증건').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위 피고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

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피고가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을 당하거나, 폐업 내지 영업을 정지당하거나, 조세공과를 채납하거나,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는 위 피고에게 별도의 통지나催告없이 채권자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4. 피고 B 은 제 1 내지 9 보증건에 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 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5. 그 후, 피고 A 는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8. 2. 28. 이래 이자연제 사태에 빠짐으로써 2018. 3.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도합 1,857,745,143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가. 2018. 6. 19. 1,702,613,976원(제1보증건 43,061,698원 + 제2보증건 182,030,334원 + 제3보증건 81,901,021원 + 제5보증건 135,280,393원 + 제6보증건 171,985,621원 + 제7보증건 74,825,202원 + 제8보증건 558,501,864원 + 제9보증건 455,027,843원)

나. 2018. 6. 27. 155,131,167원(제4보증건)

6.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4,146,244원입니다.

7. 그렇다면, 피고 A, B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1,891,387원(총 대위변제금 1,857,745,143원 + 법적절차비용 4,146,244원) 및 그 중 1,702,613,976원(제1 내지 3, 5 내지 9 보증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18. 6. 19.부터, 155,131,167원(제4보증건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2018. 6. 27.부터 각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구상금채무가 있습니다.

끝.

